

##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### ◇ 행정규칙명

특허·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

### ◇ 제·개정 이유

PCT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선출원의 심사순위와 분할출원의 심사 순위, 재심사 처리기한을 변경하여 PPH 출원의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일반특허출원의 심사처리를 증가시켜 출원인의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임

### ◇ 주요내용

- 가. 심사 순위 예외에 ‘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’ 추가(제20조제1항)
- 나. 분할출원의 심사순위를 분할출원의 심사청구일에 따라 심사하도록 변경(제20조제1항, 제21조제1항·제2항)
- 다. 재심사 출원의 심사착수기한 규정 삭제(제55조제1항)
- 라. 특허·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의 착수처리기간을 우선심사결정일로부터 3개월로 변경(제66조제1항제2호)